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연방법무부, 가격 담합한 BAYER 사에 6천 6백만 달러의 벌금 부과

독일의 고무화학제품 제조업체인 Bayer AG는 고무화학제품에서의 국제적인 가격고정 카르텔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6천 6백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합의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Bayer사는 다른 고무화학제품 제조업체들과 담합하여 1995년~2001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고무화학제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제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ayer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고무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수 많은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쳐왔던 카르텔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고무화학제품은 타이어, 고무호스, 벨트나 신발 등과 같은 고무제품들의 탄력성과 내구성을 강화시켜주는 일련의 첨가물들을 말한다. 약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고무화학제품들이 매년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다.

Bayer사는 다른 사업자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합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고무화학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가격에 관한 회합을 열고 참가하였다. 둘째, 이러한 회합들을 통하여 고무화학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이들이 담합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정보교환과 회의에 참석하였다. 넷째, 합의된 바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견적서를 작성했다. 다섯째,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무화학 제조업체들과 판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왔다.

“이번 사건은 고무화학제품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

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James M. Griffin 독점금지국 형사집행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기소된 사업자는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조사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04년 5월 15일에 연방법무부는 커넥티컷에 위치한 Crompton사를 고무화학제품 시장에서 가격고정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 5월 27일에 이 회사는 유죄로 인정되어 5천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Bayer사는 서면법 제1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 최고 1천만 달러와 사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은 공모자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피해자들이 이들 통해 잃은 손실의 2배까지 증액될 수 있다.

이번 케이스는 독점금지국 샌프란시스코 지방사무소와 FBI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2004. 7. 14. 연방법무부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격고정 담합 사에게 1천만 달러 벌금형 선고

지루하게 끌어오던 소송 끝에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서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고정, 담합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De Beers Centenary AG에게 1천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94년에 시작되었는데 최근에서 와서야 오하이오주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서 끝이 났다.

1994년 오하이오주 컬럼비아 연방 대배심은 De Beers사를 1991년에서 1992년까지 전세계 시장에서 각종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담합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었다. 당시 또 다른 공모자였던 General Electric사는 기소되었으나 연방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스위스 루체른에 본사가 있었던 De Beers사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어 선고를 받게 되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품은 도로건설, 석재 절단 및 가공, 자동차 제조, 광업 및 석유 시추 등을 포함한 각종 제조 및 건설 부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De Beers사는 다른 공모자들과 전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함에 따라 기소되었다. 또한 De Beers사의 경영진, 종업원 및 대리점

들은 각종 회합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가격정보 및 향후 계획을 다른 참가사업자들과 교환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소내용에 따르면, De Beers사와 카르텔 참가사업자들은 구체적인 가격정보나 가격책정 계획을 상호간 교환하기 위한 책임자를 두기도 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연방법무부에서 불법적인 가격담합을 퇴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비록 관할권 문제가 연방법무부로 하여금 De Beers사에 대한 기소를 어렵게 했지만, 정의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e Beers사와 De Beers Consolidated Mines Ltd.와 같은 계열 회사들은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제조, 유통 및 판매하는 여러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매우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흑연이 풍부한 물질을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2004. 7. 13. 연방법무부

Pate 반트러스트국장, 반트러스트형사벌강화법 시행 발표

반트러스트국 R. Hewitt Pate 국장은 부시 대통령이 2004년 반트러스트형사벌강화법을 포함하는 법률

1086호에 서명을 한 것을 받아 금일 발표했다. 동 법률은 서면법의 법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억 달러(현행은 1,000만 달러),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00만 달러(현행은 35만 달러), 금고형 기간을 최대 10년(현재는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동 법률은 또한 기업 leniency 신청자가 사인(私人)이 행하는 기타 다른 카르텔 구성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도 사인에 대하여 협력할 경우 당해 leniency 신청자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손해액(3배액배상에서) 당해 기업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실제의 손해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동 법률은 당국의 핵심이 되는 사명의 하나인 반카르텔 집행 프로그램을 매우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형사벌의 강화는 반트러스트 위반의 벌칙과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의 벌칙과의 정합을 이루는 것으로, 금일 시장에서 카르텔에 의해 가해진 큰 악영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벌칙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동 법률의 비3배액조항은 leniency 신청에 대한 큰 저해요인을 없애는 것이며, 보다 많은 카르텔의 폭로를 추구하고, 반트러스트국의 기업 leniency 프로그램을 보다 한층 효과적인 것으로 한다. 동 법률에 의해 높아진 억지력은 하드코어 카르텔 활동의 발견, 기소, 처벌 및 억지에 유용하며, 보다 자유롭고도 개방

된 경쟁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2004. 6. 23.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 7월호 발췌

Empagran 사건에 관한 미국연 방대법원 판결(개요)

6월 14일 미국연방대법원은 F. HOFFMAN-LA ROCHE LTD. ET AL v. EMPAGRAN S.A. ET AL. (Empagran 사건)에 대하여 원고측 (F. HOFFMAN-LA ROCHE LTD. ET LA.) 승소 및 하급심으로의 환송 판결을 내렸다.

■ 판결요지 전문

1982년 외국거래반트러스트개선법 (FTAI A)에서는 서면법은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에 관한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합중국법전 제15장제 6a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 국내 통상 또는 미국의 수출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본 건에 있어서 비타민 구입자는 비타민 제조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가 가격구속의 공모를 행하고, 미국 및 외국에 대한 비타민 가격의 인상을 도모, 서면법에 위반했다고 하여 class action 소송을 했다. 이것에 관하여 피고는, 단지 미국 통상(通商)의 밖에서 비타민을 구매한 외국에 소재한 외국기업인 외국구매자(원고)에 대한 소송을 기각할 것을 주장했

다.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에 있어 연방지방법원은 FTAIA를 적용함과 더불어 예외규정의 어느 쪽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방항소심에서는 FTAIA의 배타규칙은 적용되지만 「(서면법의) 청구를 발생시킨다」(합중국법전 제15장제6a조제(1)(A) 및 (2))와 같은 국내통상에 대하여 「직접 사실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효과를 갖는」 행위에 대하여 예외규정도 적용된다고 결론상 환송을 명했다. 대법원은 외국의 효과, 즉 보다 높은 외국의 가격이 국내의 효과, 즉 보다 높은 국내가격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추정하면서, 그렇지만 더욱 두 가지의 효과간에 관련이 결여는 본 법의 내용, 입법과정 및 유해한 가격구속활동의 저지라는 정책목적에 따라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가격카르텔 행위는 미국의 내외 고객에게 중대하고도 유해한 영향을 주지만 외국에서의 유해한 영향은 어떠한 국내의 유해한 영향과 관계가 없으며, FTAIA의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외국에서의 영향에 근거한 주장으로 서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 FTAIA의 일반적인 예외규칙은 단순히 수출을 포함하는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는 FTAIA의 범위 밖이라는 피고측의 기본적인 주장은 각하한다. 하원사법위원회는 법안의 당초의 말을 「수출무역 또는 수출통상」에서 「거래 또는 통상(수출무역 및 수입통상을 제외)」으로 변경했으

나, 이것은 신중을 기하여 적용제외의 범위에 미국의 수출은 관계해 있지 않은 완전히 외국에 있어서의 통상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FTAIA의 예외규정은 2가지 이유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는, 대법원은 통상 다른 나라 주권당국의 불합리한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애매한 제정법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 이 해석의 규칙은 관례적인 국제법원칙을 반영하고, 미국 법률을 제정할 때 타국의 법적인 주권이익을 입법자가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점을 법원에 주의환기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국가에 있어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법률이 함께 조화하는 것을 돕게 된다. 외국의 행위에 대해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국의 통상규제를 행하는 당해국의 능력에 간섭하는 것이 되는 한편, 법원은 법률이 외국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국내 반트러스트 손해를 시정하는 의회의 대처를 반영하고 있는 한, 그와 같은 적용을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예양원칙과 일치한다고 하여 장기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외국의 행위가 외국에서의 독자의 손해를 야기시키며, 그것만이 원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경우, 당해 행위에 대하여 미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간섭이 될 우려는 동일하나, 그 간섭에 대한 정당성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주장되는 반

경쟁적 행위의 몇 가지는 미국에서 행해졌더라도 외국의 경우보다 높은 가격은 의회에 의해 금지되는 국내의 어떠한 반경쟁적 행위와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의회는 당해 행위가 외국에서의 손해를 야기시킬 경우 셔먼법의 제약으로부터 국내(또한 외국)의 반경쟁적 행위를 해방하기를 바랐다. 피고의 주장과는 반대로 다른 나라는 전지역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반트러스트법을 채용하고 있지 않으며, 여하튼 적절한 시정조치에 대해 극적인 불일치 때문에 예외의 문제는 현실로 존재한다. 외국의 손해사안이 일률적으로 예외가 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 개별적인 예외분석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피고의 다른 주장은 아무래도 복잡하여 실행가능성이 없다.

둘째, FTAIA의 문언과 역사는 동법률에 의해 셔먼법이 외국통상에 적용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명확화 또는 한정할 것을 의회가 기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가 FTAIA를 채택했을 때 법원이, 셔먼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중요한 지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결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6개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③ 피고에 의한 문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법률의 자연스런 해석방법을 나타내고 있을지 모르나 상기에서 주장된 예외와 역사의 고찰에 의해 피고의 해석방법은 FTAIA의 기본적

인 의도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에 의한 억지력을 기본으로 한 정책의 주장은 반트러스트 당국에 의한 반대의 주장에 비추어 무효이다.

④ 재심에서 항소법원은 피고가 가리키는 외국에서의 손해가 국내의 영향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다른 주장을 적절히 보유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만일 그렇다면 관련된 주장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판결은 무효하여 파기환송 한다.

2004. 6. 14. 미 연방대법원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 7월호 발췌

EU

EU위원회, 영국 통신사업자의 국제 로밍 요금에 대해 이의제기

EU위원회는 영국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인 O2와 Vodafone에 대해 각각 반대성명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이 성명서는 O2와 Vodafone이 다른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mobile network operators: 이하 MNOs)과 도매시장에서 국제 로밍(roaming)을 하는 경우 그 요금과 관련된 것이다. 다른 MNOs의 고객들이 영국에서 자신들이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서는 O2나 Vodafone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상 국제 로밍이라고 하는데, 비싼 로밍 요금은 영국에 체재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EU 역내의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엄청나서 현재 EU 회원국 국민의 81%가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별로 이동전화 가입율은 90%를 육박하고 있다. 또한 유럽 내 이동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다른 회원국에 가서도 자신의 이동전화를 자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로밍 요금 수준이 높아서 이동전화 사용료를 인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매우 높은 수준의 로밍 요금은 국내에서의 저렴한 요금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의 조치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Mario Monti 경쟁위원은 말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Vodafone사는 적어도 1997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영국내 국제 로밍 서비스 도매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한 지위 남용행위로 인해 다른 유럽내 MNOs에게 받는 로밍 요금을 불공정하고 과도하게 받아왔다. EU위원회는 또한 O2사에 대해서도 1998년부터 2003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Vodafone사와 동일하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2001년 이후 계속 수집해 온 증거에 따라서, EU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영국 네트워크를 적어도 1997/1998년에서 2003년 9월 까지의 기간 동안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보았다. 그리고 Vodafone과 O2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각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왔다. IOTs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그 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문제된 국제 로밍 서비스에서 얻은 수익은 MNOs가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수익의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밍 요금은 Vodafone과 O2가 이 기간 동안 영국내 다른 독립 서비스 제공업자 (Independent Service Providers: ISPs)들에게 제공한 접속료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영국 가입자들을 위한 독립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이통통신 접속은 외국의 MNOs에게 제공하는 국제 로밍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EU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이 둘간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 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반대성명서에는 경쟁법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1차적 의견이 나타나있다. Vodafone과 O2는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할 기회를 갖는다.

2004. 7. 26. EU위원회

EU위원회의, 소니와 베텔스만과의 조인트벤처 승인

EU위원회는 Sony사와 Bertelsmann사가 녹음 사업을 위한 합작기업인 Sony BMG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합작기업의 설립을 반대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음악 사업에서의 시장집중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엄밀한 감시를 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1월 9일에 위원회는 Sony사와 Bertelsmann AG (BMG)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녹음 사업을 하는 Sony BMG라는 합작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기업은 새로운 아티스트의 발굴과 그들의 음악을 녹음·마케팅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음반 발행이나 제작 및 유통 사업은 Sony BMG의 사업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이른바 음악 시장의 메이저들이 5사업자에서 4사업자로 줄어들어 따라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매우 신중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Sony BMG, Universal, EMI 및 Warner Music 들간 집합적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특히 녹음 시장에서 주목했다. 막대한 양의 가격에 관한 데이터와 유럽 역내의 회원국들에서 녹음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5대 주요 사업자들이 발매한 CD 가격은 몇몇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암묵적 담합을 촉진할 수 있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과거에 행해졌던 가격조정 행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과 주요 사업자가 5사업자에서 4사업자로 감소함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녹음 시장에서 향후 집합적인 시장지배적지위가 형성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EU위원회는 또한 최근에 생겨난 온라인 음악 저작권 시장과 온라인 음악 유통 시장에 이번 기업결합의 파급효과가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했는데,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Sony BMG의 녹음 사업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Bertelsmann사의 일방향 TV와 라디오 사업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위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사례에서는 EU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벌였다.

Bertelsmann Music Group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뿐만 아니라 책과 잡지도 출판하고 있는 국제적인 미디어 기업인 Bertelsmann AG의 계열사이다. BMG사는 음악 상표로

서 Arista, Jive, Zomba 및 RCA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Sony Corp of America사는 가정용 전자제품 제조, 연예사업, 음악 및 출판 사업을 하는 일본 소니 그룹의 계열사이다. 소니 그룹은 Columbia, Epic 및 Sony Classical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Sony Music Entertainment를 통해 녹음 사업을 해왔다.

2004. 7. 20. EU위원회

유럽제1심법원, 흑연전극시장에서의 반경쟁적 카르텔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결정에 의해 부과한 제재금을 감액

제재금 총액은 2억 720만 유로에서 1억 5,280만 유로로 감액된다.

2001년 결정에 의해 유럽위원회는 흑연전극 분야에서의 가격카르텔협정 및 「현지생산자」(home producer) 원칙에 따른 시장분할 존재를 인정하였다. 흑연전극은 주로 전로(電爐)를

사용한 철강의 제조에 사용된다. 그 결과 유럽위원회는 위반행위에 관여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기업 8개사에 대하여 총액 약 2억 2,000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들 중 7개사가 대부분 제재금의 감액을 요구하여 유럽제1심법원에 본 결정을 제소했다.

금일 판결에 의해 유럽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공동체경쟁법에 따라 부과한 제재금에 관하여, 산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잘못된 것을 인정했다.

유럽제1심법원은 그로 인해 이들 기업에게 부과한 제재금을 총액 약 1억 5,300만 유로로 감액하였다. 4개의 일본 기업(동해카본, 일본카본, 소화전공 및 SEC)에 대한 감액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러나 유럽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사실을 다루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일본카본과 SGL카본에게 인정된 당초의 감액을 철회한다는 유럽위원회의 요구 일부를 인정했다. 이 2개사는 이전에 인정한 사실을 유럽제

1심법원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그 결과, 당초 인정된 감액이 취소되었다.

2004. 4. 29. 유럽제1심법원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 6월호 발행

유럽위원회, 경쟁규칙의 대폭적인 개혁을 기록

5월 1일 EU 지역내에서의 경쟁규칙 집행에 있어서 혁명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EU 확대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카르텔과 지배적지위 남용 금지라는 40년간 집행에 있어서 최초의 개혁이 실시되는 날이다. EU의 새로운 합병규제규칙이 이날 발효하고, 확대 후 4억 5000만명의 소비자를 가지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는 EU 지역내에서의 합병과 취득을 평가하는 원스톱 샵(one-stop-shop) 제도가 보다 개선되게 된다. 국가보조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동 이벤트를 기록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Monti 위원과 Lowe 총국장의 인터뷰를 기재한 Competition Newsletter 특별판을 발행했다.

5월 1일, 2개의 주요한 경쟁상의 개혁이 실시된다.

- 유럽위원회는 EC조약의 주요한 경쟁조항인 제81조(단일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저해하는 협정과 협조행위를 금지하는 것) 및 제82조(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반트러

카르텔 참가 기업에 대한 유럽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액과 유럽제1심법원에 의한 감액후의 금액(제소하지 않았던 VAW 알루미늄은 제외)

기업명	유럽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	CF에 의한 감액후의 제재금
동해카본	2,450만 유로	1,227만 6,000 유로
SGL카본	8,020만 유로	6,911만 4,000 유로
일본카본	1,220만 유로	627만 4,400 유로
昭和電工	1,740만 유로	1,044만 유로
UCAR	5,040만 유로	4,205만 유로
SEC	1,220만 유로	618만 8,000 유로
The Carbide/Graphite Group	1,030만 유로	648만 유로
총액	2억 720만 유로	1억 5,277만 2,400 유로

스트 규칙(규칙 1/2003호)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규칙은 1962년에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집행규칙(규칙17/62호)을 대체하게 된다. EU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과 취득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병규제규칙(규칙 139/2004호)이 발효하고 1990년 이래 현행의 합병규칙을 대체하게 된다.

「5월 1일 EU 지역에서 경쟁규칙의 집행에 있어서 혁명을 보게 될 것이다」고 Monti 위원은 금일 발행된 Competition Newsletter 특별판 인터뷰에서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반트러스트 규칙에 대해 언급하면서, Monti 위원은 「금일의 변화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준법기업이 과거 10년전의 낡은 법적 구속에서 해방되고 관료주의 저하와 유럽단일시장에서 보다 나은 수준의 경쟁의 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성숙한 제도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다른 인터뷰에서 Philip Lowe 경쟁총국장은 반트러스트의 새로운 시스템에 있어서 유럽 경쟁법은 국내법과 함께 적용되게 되며, 25개의 회원국 경쟁당국과 중앙 EU경쟁당국은 European Competition Network (ECN)라 불리는 한 개의 커다란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ECN에 의해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로 결속하고, 이것은 모든 회원국 경쟁당국과 유럽위원회를 결합시킬 것이다」.

본 인터뷰는 국가보조 분야, 특히 약체화한 기업에 대한 정부 원조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보다 우려가 적은 사안의 평가에 대한 경제테스트의 도입이라고 한 현재 진행중인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개입을 제한할 개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에서 EU에 대한 악평을 내린 원인이 되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Bavarian sports Clubs에 대한 원조 또는 Dutch Marinas 및 British piers에 대한 원조인 사안들과 같이 일부 유럽위원회는 원조를 받았다고 하고, 다른 일부의 유럽위원회는 받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쌍방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안은 통상 국내 수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Lowe 국장은 언급했다.

유럽위원회는 또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유럽에서는 매우 드문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포함한 민법의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미국의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사소(사적소송)는 충분한 법집행에 공헌한다. 2001년 Courage vs Crehan 사건에서 유럽 법원은 만약 경쟁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개인이 배상청구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다면, 제81조의 완전한 효과는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결론내렸다.

유럽위원회는 2003년에 연구회를 조직하여, 본 건에 관한 레포트를 금년 후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2004. 4. 21. 유럽위원회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 6월호 발췌

캐나다

Morgan사, 조사 방해 및 국제 카르텔 혐의로 벌금 100만 달러 선고

The Morgan Crucible Company가 공공 교통수단에서 이용되는 탄소 봉 브러쉬와 집전기 제조업자들간의 가격고정을 조사하던 경쟁국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55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번 조사 절차에서는 또한 Morgan Crucible사의 캐나다 지사와 Morganite Canada Corp. of Mississauga가 캐나다에서 국제 카르텔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4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경쟁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조사절차를 방해하는 자들도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할 것이다”고 Richard Taylor 경쟁부위원은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Morgan Crucible사는 영국에 소재한 지주회사로서 경쟁국의 조사절차에서 거짓되고 불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형법 위반으로 온타리오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경쟁국이 조사하는 동안, 대표이사였던 Morgan Crucible과 경영진 일부는 캐나다에서 팔리고 있는 탄소봉 브러쉬와 집전기에 대한 가격고정 담합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 부품들은 전류를 전선이나 레일로부터 지하철, 전차 및 경전철과 같은 운송 수단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Morganite Canada사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해외 지사인 Morganite Electrical Carbon Ltd.가 경쟁사들과 불법적으로 담합하여 결정된 가격 지침을 받아서 이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 혐의가 인정되어 캐나다 경쟁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이 기간 동안 National Electrical Carbon Canada라고도 알려져 있는 Morganite Canada사는 약 2백만 달러의 가치에 해당되는 탄소봉 브러쉬와 집전기를 캐나다에서 판매했다.

경쟁국은 독립적인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모든 캐나다 국민들이 경쟁적인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 7. 16. 경쟁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공정거래정책 평가 내용 발표

공정취인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번에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시책은 2003년도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치, 기업결합에 관한 조치, 하청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경품표시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심판절차이며, 이밖에 독점금지법에 관한 홍보활동도 평가대상에 넣었다. 이들에 대한 평가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3년도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치(실적평가)

(1) 시책의 실시 상황

법적 조치에서는, 입찰담합 14건, 가격카르텔 3건, 사적독점 1건, 불공정한 거래방법 7건으로 다양한 사건 심사를 실시했다. 또한, IT분야 등 부당염가판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였다. 과징금 납부명령 액수는 38억 7,000만엔, 과징금 납부명령 건수는 468건이다.

(2) 평가결과

(가) 시책의 필요성

구조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쟁정책의 강력한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특히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나) 시책의 유효성

형사고발 1건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장구조가 과점적이 되고 있는 사업분야, IT·공익사업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우월적지위의 남용행위, 부당염가판매,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덤핑 수주와 관련되는 사안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사안에 엄정하게 대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별도로 개별 사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할 예정이다.

(다) 시책의 효율성

법적 조치를 행한 사건의 평균 심사 기간은 약 9개월로, 전년도보다 약 1개월 단축되었다. 한편, IT·공익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사건은 3개월 이내라는 목표 설정 기간을 두고 있지만, 5.9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앞으로 한층 더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신고 정보에 대한 사건 처리수의 비율은 2001년도의 11%로부터 2003년도에는 22%로 상승하여, 신고 처리 부문의 증원 등에 의한 어느 정도 성과가 인정된다.

(라) 향후의 과제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적극

적이고 신속히 배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하기 위해서는, 심사 부문의 인적자원이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처리기간의 단축, 신고 정보의 사건 처리화의 촉진이라고 하는 점이 과제로서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 부문 전체에 걸친 체제 정비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기업결합에 관한 조치(실적 평가)

(1) 시책의 실시 상황

신고가 되었던 합병 103건, 기업분할 21건, 영업양수 등 175건, 주식 소유 보고서 959건으로 합계 1,258건을 심사했다.

(2) 평가결과

(가) 시책의 필요성

시장에 있어서 경쟁에 폐해를 가져오게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행위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엄정·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시책의 유효성

사전 상담을 포함해서 심사한 안건 중 5건에 대해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당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당사회사가 그

것을 해소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유효한 기업결합심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결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참가가 된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기업결합 사례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의 충실을 도모하여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방지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 시책의 효율성

서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의 평균치는 18.6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0.7일 감소했으며, 서면 심사로 불충분하여 상세한 심사를 실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80.3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었다. 서면 심사나 상세 심사의 평균 처리기간 등으로 보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세 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며, 상세한 심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시간을 들여 보다 상세하게 심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성이 있는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향후의 과제

대형화·복잡화되어 가는 기업결합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한층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 능력·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취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등 적극적으로 외부 인재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결합심사 부문에 대한 인원의 보강 및 대형·복잡한 안건에의 중점적인 인원 투입에 의해, 기능·체제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하청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치 (실적평가)

(1) 시책의 실시 상황

사건 처리 건수별로 보면, 권고 8건, 경고 1,357건으로 합계 1,365건이다. 특히, 권고는 과거 20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2) 평가결과

(가) 시책의 필요성

원사업자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우월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여, 시장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시책의 유효성

2003년도에는 권고가 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한편,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공정취인위원회의 권고·경고 후에도 감액 또는 지불지연의 하청법 위반행위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회답하고 있는 수급사

업자도 있으므로, 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배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시책의 효율성

권고의 평균 처리 일수는 147일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81일 감소했다. 경고와 관련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한 하청법 위반사건이 감소하고, 30일을 넘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증가하였다.

(라) 향후의 과제

하청법의 개정에 의한 규제대상 범위의 확대와 하청법 위반사건 조사 부문 전체에 걸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서면 조사표의 전자 온라인에 의한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 등을 할 필요가 있다.

4. 경품표시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실적평가)

(1) 실적의 실시 상황

사건 처리 건수가 배제명령 27건, 경고 382건, 주의 242건으로서 합계 651건이다. 배제명령 건수는 과거 20년간에 비추어보아 가장 많은 건수에 해당된다. 특히, 부당표시 사건은 544건으로 큰 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평가결과

(가) 시책의 필요성

소비자가 적절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 또

는 서비스의 품질 등의 내용이나 가격 등의 거래조건에 오인을 주어서 소비자의 적절한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표시 및 부당한 고객 유인이 되는 과대한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 경품표시법에 근거해 엄정·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나) 시책의 유효성

2003년의 배제명령 27건에 비해 현저한 증가를 볼 수 있다. 배제명령은 비교적 대규모 사업자가 많은 업계에 있어서는 업계 전체에 대한 억제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업계에 있어서는 업계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한정적이다. 이러한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선례가 될만한 특징이 있는 위반 사건의 우선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후자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개별 사건을 엄정·신속히 처리하여 경품표시법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업계에 대한 효과적 인 주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시책의 효율성

배제 명령에 필요로 한 사건 처리기간은 2003년에 1건당 평균 약 183일이었으며, 사건의 복잡·교묘화 등에 의해 사건 조사와 관련되는 시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사건 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향후 조사 수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향후의 과제

개정 경품표시법의 시행에 의해 사

건 처리의 신속화가 기대되지만, 사건의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정취인위원회의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조사 부문 전체에 걸친 체제 정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초미자 연수나 중견조사 담당관에 대한 조사 수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적인 연수 등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다.

5. 독점금지법에 의한 심판절차(실적평가)

(1) 시책의 실시 상황

심판개시결정 건수가 77건, 2003년도 말의 심판계속 건수 140건, 심리판결 건수 20건이다. 1999년도와 비교하여 심판개시결정 건수는 약 5배, 심판계속 건수는 약 3배로 크게 증가했다.

(2) 평가결과

(가) 시책의 필요성

심판절차는 법에 따라 정해진 수속이며, 법운용을 엄정하게 실시하는 것이고, 적정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독점금지법에 근거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삼면 구조에 의한 심리라고 하는 보다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한 절차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나) 시책의 유효성

최근 5년간에 심리판결을 한 심판

사건 66건에 대해서, 심리판결이 소송에 의해서 삭제된 건수는 3건(4.5%)에 불과하여, 심판절차가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시책의 효율성

2003년도 말 시점에 있어 계속중인 심판사건 140건 중에서 50건이 심판개시결정으로부터 2년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 심판수속에 필요로 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중심리의 실시 등에 의한 심판절차의 효율화가 이루어졌다.

(라) 향후의 과제

심판사건수의 증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심판관의 숫자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장기간을 요하는 심판절차를 요하는 심판사건도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심판절차의 효율화를 통해서 신속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독점금지법의 홍보활동(사업 평가)

(1) 시책의 실시 상황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정취인위원회가 행한 활동에 대한 공표, 각종 팸플릿 등의 작성·배포, 홈페이지의 개설, 전문가 회의·간담회의 개최, 학교 교육 등을 통한 독점금지법 보급의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평가결과

(가) 시책의 필요성

독점금지법 등이나 공정취인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려 이해를 얻음으로써 경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깊게 하여,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할 필요가 있다.

(나) 시책의 유효성

보도 발표 실시에 따른 신문 보도량을 추계했는데 총계 41,190행(보도 발표 1건당 149행)이며, 이러한 보도 발표는 유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홍보용 비디오에 대해서는 배포 후 이용 상황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는 전문회사의 조사·분석에 기초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학교 등에 있어서의 독점금지법 등에 관한 수업에 대해서, 학생 및 교사의 만족도는 높았고(학생 73.5%, 교사 100%), 학교 교육으로의 이해 증진에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시책의 효율성

미국 및 EU의 경쟁당국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홍보 담당 부서의 인원과 비교하여, 동일한 정도 이하의 인원으로 운용되고 있어 대개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라) 향후의 과제

독점금지법 개정법안을 올 해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독점

금지법 개정법안이 성립되면, 그 내용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부터 톱 페이지로 시작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원칙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관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집 페이지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제공량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04. 7. 28. 공정취인위원회